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6-4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 (제2009-002호)	박○○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인증제한 3년 (`26. 6.19.)